

의안번호	제542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
지원 조례안

발의자	김종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4월 11일

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(김종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4월 11일
발의자 : 김종필, 이동우, 김호경,
박지현, 박진희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전통시장 화재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도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-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자율소방대 구성, 등록, 지원, 자율소방대 운영 및 운영협의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)
- 자율소방대원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자율소방대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도지사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충청북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통시장”이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.
2. “자율소방대”란 충청북도 행정구역 내 등록된 제1호의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.

가.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

나.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

다.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

라.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

마. 전통시장 내 안전을 위한 지원 및 예방 홍보

바.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전통시장의

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율소방대 구성) ① 전통시장의 상인회는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율소방대에는 대장, 부대장, 대원을 둔다.

③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, 대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,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5조(자율소방대 등록)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율소방대 지원)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자율소방대 운영) ①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.

② 대장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구성·운영)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, 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·훈련)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원에게 교육·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권한의 위임)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
2.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
3. 제8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·운영
4.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 및 지도·감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, 일관성,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,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5. (생략)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통시장”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·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

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.

가.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

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<이하 생략>

제65조(상인회)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.

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

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

2.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

3.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

4.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

5.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(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6.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
7.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

⑤ ~ ⑥ <생략>

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<이하 생략>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 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율적 화재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,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.